생애최초

청소년유권자를 위한 선거 가이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THE KOREA ASSOCIATION OF YOUTH CENTER

제출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2020년 생애최초 청소년유권자를 위한 선거가이드를 제출합니다.

2020년 03월

연 구 진

책임 연구자 한도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

공동 연구자 이상화 청소년HRD연구소 소장
조중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팀장

연구 보조원 정재욱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대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Contents

Ⅰ. **생애최초 청소년유권자 선거가이드 소개** ····· 1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요 및 일정 ····· 3
- 생애최초 청소년유권자 선거가이드 개발배경 및 내용 ····· 4

Ⅱ. **민주주의와 국회의 이해** ····· 7
- 민주주의와 참여 ····· 9
  - 민주주의 ····· 9
  - 민주시민역량 ····· 11
  - 투표를 꼭 해야 하는 이유 ····· 12
- 대한민국 국회 ····· 14
  - 대한민국 국회 ····· 14
  - 국회의 구성 ····· 14
  - 국회의 회기 및 발언제도 ····· 15
  - 국회의원 하는 일(역할과 권한) ····· 16

Ⅲ. **선거와 투표방법** ····· 21
- 선거의미와 종류 ····· 23
- 투표절차와 참여방법 ····· 26

Ⅳ. **개정된 선거법과 유의사항** ····· 33
-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 35
- 청소년유권자 유의사항(법령 위반사례) ····· 36

Ⅴ. **부　　록** ····· 37
- 국회의 역사 ····· 39

Ⅰ.생애최초 청소년유권자 선거가이드 소개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요 및 일정
- 생애최초 청소년유권자 선거가이드 개발배경 및 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요 및 일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대한민국의 총선거로,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를 수행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2020년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특히 금번 선거부터는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2020. 1. 14.)으로, 만 18세도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 개 요

◎ 선 거 일 : 2020. 4. 15.(수) * 법정공휴일이며,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 거 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2. 4. 16. 이전 출생)
◎ 임기기간 : 4년 (2020. 5. 30. ~ 2024. 5. 29.)
◎ 출마자격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 선출대상 : 국회의원 300석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 주요일정

◎ 12.17.(화) 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3.24.(화) ~ 3.28.(토) :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3.26.(목) ~ 3.27.(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 4.2.(목) : 선거기간개시일
◎ 4.10.(금) ~ 4.11.(토)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4.15.(수) : 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생애최초 청소년유권자 선거아이드 개발배경 및 내용

※ 생애최초 청소년유권자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를 기준으로 생애최초 청소년 유권자는 1999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부터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개발배경

◎ 본 선거가이드 제작·보급 사업은 생애최초 청소년유권자가 엄연한 사회구성원이자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히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 개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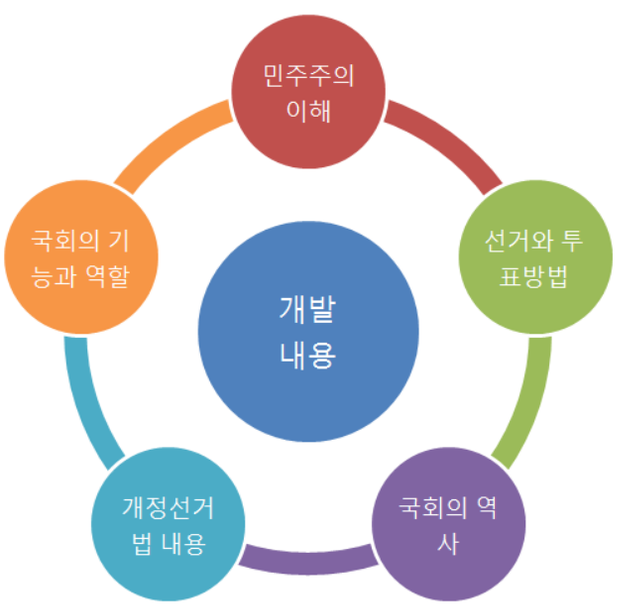

◎ 선거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생애최초 청소년유권자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배경지식의 제시
-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이해, 국회의 기능과 역사

◎ 투표를 위한 절차적 지식과 지침
- 선거와 투표방법에 대한 이해,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 새내기 유권자 유의사항 등 민주시민교육부터 선거교육까지 아우르는 자료로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습니다.

■ 활용방안

◎ 학교 및 청소년기관·단체·시설 등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권자 교육 시 활용 가능합니다.

◎ ‘청소년수련시설포털 홈페이지(http://youthnet.or.kr)에서 제공하는 「생애최초 청소년유권자 선거가이드 카드뉴스」와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시행이 가능합니다.

Ⅱ.민주주의와 국회의 이해

-민주주의와 참여

-대한민국 국회

민주주의와 참여

■ 민주주의란?

◎ 민주주의의 어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 그리스어는 Demos(국민) 이라는 단어와 Kratos(통치)라는 단어가 합쳐져 이루어진 말로서,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정치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어원은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헌법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

우리 헌법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하며, 대표자(국회의원, 대통령 등)는 정해진 임기에 의해 교체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 민주주의 기본원리

- 국민주권의 원리 → 국민이 국가사회문제 해결의 의사결정 권한을 지님.
- 다수결의 원리 → 구성원의 다수 의사에 기초해 공동체 전체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사를 하나로 결정하는 방식
- 권력분립의 원리 →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개 영역으로 나누고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정치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
- 대의제 : 국민이 직접통치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견지하는 가운데, 민주적 정치과정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간접적 정치참여방식*(☞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
- 법치주의 : 독재 등에 의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규정된 법에 의한 정치를 의미.

◎ 민주주의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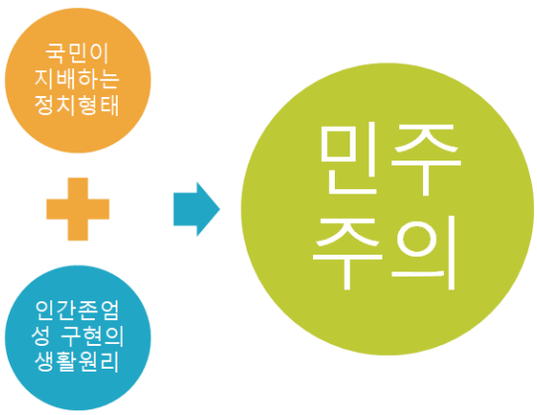

○ **국민이 지배하는 정치형태의 관점**

– 상기의 5가지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국가의 정치가 행해진다는 관점에서의 민주주의

☞ 정치란, 다양한 형태의 사회집단 내에서 사람들 간 생각의 차이로 인한 갈등, 다툼 등을 해결해 나가는 국민 참여의 과정

○ **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생활원리의 관점**

– 모든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인간이 탄생하면서 가지는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해야한다는 관점에서의 민주주의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정치형태로서 국가차원의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적인 다양한 삶의 배경이 되는 모든 사회영역인 가정, 지역사회, 국가사회, 세계사회 등에 있어서도 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필요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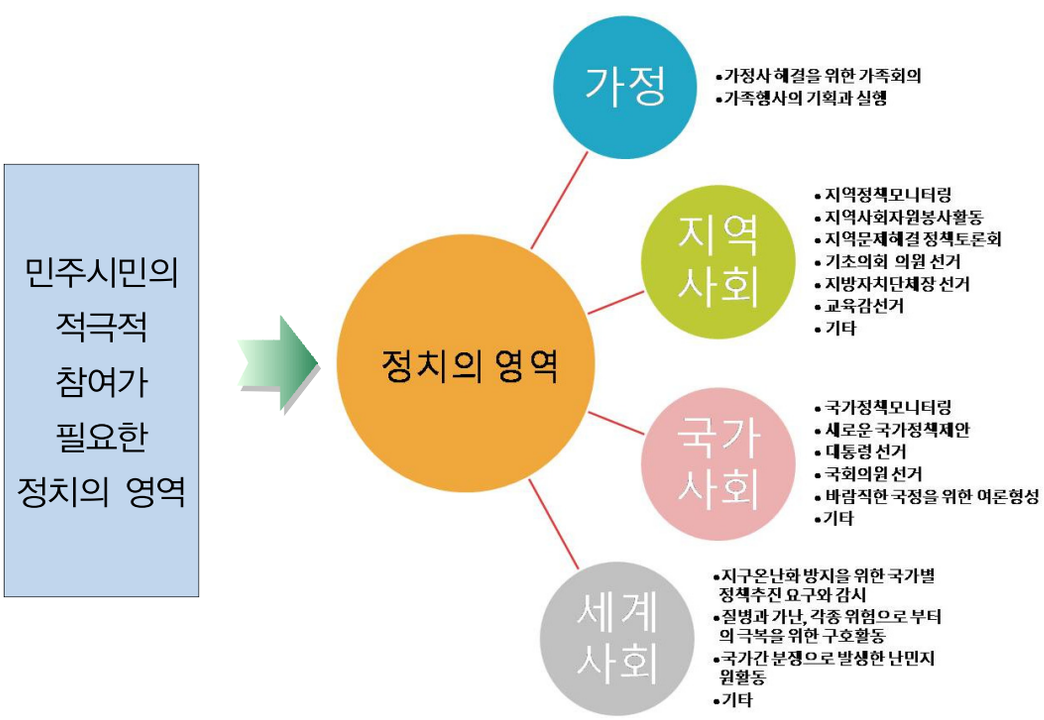

■ 민주시민역량이란?

◎ 민주시민역량의 의미

민주주의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시민)으로서 국가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 잘 운영되며, 또한 시민들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잘 반영되는 생활문화가 정착되는데 필요한 시민들이 갖추어야할 의식, 태도, 지식, 기술 등을 의미한다.

◎ 시민역량의 내용

구분	내용
정치체제이해	다양한 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민주주의를 중심으로)를 통해 어떠한 정치 체제가 보다 더 시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습득
자기주장	집단 내에서의 자기주장에 대한 적절한 표현 능력
설득	집단 내에서 자기주장의 타인에 대한 합리적 설득능력
타협	토론상황에서 불일치하고 있는 의사결정에 대한 타협을 통한 조절능력
정보수집분석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평가개선	집단이 합의한 활동(계획)의 수행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개선하는 능력
협동	타인과 특정한 안건에 대해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타인수용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공감 및 경청	타인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는 능력
언어능력	말과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의사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
다문화감수성	나와 다른 문화권(다문화)의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애국심	국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과 태도
애향심	지역사회를 진심으로 준중하고 아끼는 마음과 태도
가족애	자신의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
우정기반활동	동료들과의 우정을 바탕으로 활동에 임하려는 태도

◎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이란?

- 평생을 거쳐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역량을 확보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해결해야할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극 참여하여 필요한 정치적 활동을 해 나가는 공동체 지향적인 삶을 말하며, 생애최초 청소년 유권자들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민주시민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 투표를 꼭 해야 하는 이유

〈 유권자와 정치의 관계 및 흐름도 〉

◎ 투표를 꼭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 정치권력의 주체인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민주주의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 투표를 꼭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 시민으로서 국회에서 국민을 대의하여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자격(도덕성, 시민성,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정치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 만약에 정치인으로서의 지녀야할 도덕성과 시민성이 매우 낮은 사람이 매우 낮은 투표율로 인하여 선출되었을 경우 자신들을 포함한 국민(시민)들에게 끼칠 영향은 무엇인가?

- 국민(시민)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존엄성과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망각하여, 국민(시민)중심이 아닌 정치인 개인의 이득 추구만을 위한 비민주적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국회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의 정착이 불가능할 것이며,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퇴보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투표를 꼭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 국회의원이 수행해야할 가장 중요한 책무는 모든 정책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하여 작동된다. 법률을 제정한다는 의미는 결국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추구에 마땅히 필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국민(시민)들의 삶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정치인에게도 높은 수준의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선거과정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전문성을 판단하고 냉정하게 투표로서 평가함으로써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인을 최종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게 된다.

※ 특히, 만약에 능력이 매우 부족한 정치인이 선출되었을 경우 그것이 청소년 유권자 자신에게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

▪ 청소년이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과 사회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요구되는데, 특히, 교육정책, 복지정책, 고용정책, 환경정책, 주거정책, 제4차 산업과 관련한 과학기술정책 등은 더더욱 청소년세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책들이다. 그런데 만약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국회의원 등)이 이러한 청소년세대에게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을 청소년세대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결과 청소년세대는 자신의 미래를 의미 있게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 국회

■ 대한민국 국회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 기관입니다. 민의를 받들어 법치 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따위의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단원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 국회의 구성

◎ 국회의원 선출

– 지 역 구 :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비례대표 :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 등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

선거권	피선거권	임기	의원수
만18세이상	만25세이상	4년	300인 (지역구 253인, 비례대표 47인)

◎ 국회의원 특권

–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함.

•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됨.

– 면책특권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 국회의원 의무

- 헌법상의 의무 :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 국회법상의 의무 :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 국회의 회기 및 발언제도

◎ 국회의 회기

- 국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회되며 그 기간을 회기라 함.
- 국회는 회기 동안 활동능력을 가지며 안건을 심사함.

* 정기회

집회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함.
회기	100일 이내
주요활동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법률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함.

* 임시회

집회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 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국정조사 요구 시
회기	30일 이내
주요활동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정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함.

◎ 국회의원 발언제도

- 교섭단체 대표연설 :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소속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행하는 연설로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음.
- 대정부 질문 :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는 제도
- 긴급 현안 질문 :
  -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는 제도로서 총 질문시간은 120분임

•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보충질문 5분 초과할 수 없음) 이 경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 5분 자유 발언 : 국회에서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임.

– 의사 진행 발언 : 회의진행 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하는 발언으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임.

– 신상 발언 :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으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임.

– 반론 발언 : 다른 의원이 이미 행한 발언에 대해 관련 있는 의원이 해명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발언으로 발언시간은 3분 이내임.

■ 국회의원 하는 일(역할과 권한)

◎ 입 법

–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

• 헌법개정의 의의

*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임.

* 국회가 헌법개정과정에서 제안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음.

• 헌법개정 절차

* 제안(재적의원 과반수, 대통령) → 공고(대통령 20일 이상 공고) → 국회의결(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 기명투표)→ 국민투표(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 공포(대통령)

– 법률 제·개정권

• 법률 제정·개정의 의의 :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임.

• 절차 : 제안(제출) –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제출) → 회부 – 국회의장 → 위원회 심사 – 상임위원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 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 전원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정부이송(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공포(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함)

– 조약 체결·비준동의권

•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임.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 제 정

– 예산 심의

• 심의 의의 :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하여 그 효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심의 절차 : 심의절차 : 제출(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은 정부만이 할 수 있음) → 회부 →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정부 이송 및 공고(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고)

– 결산심사

• 의의 :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함.

– 기타권한

* 계속비 의결권 : 한 회계연도를 넘어 장기간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5년의 범위 내)계속비로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함.

* 예비비지출 승인권 : 예비비는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결을 얻으므로, 구체적 지출에 대해서는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국채동의권 : 국채는 국가가 세입부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재정적 의무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모집할 수 있음.

*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의한 동의권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사법상 계약 포함)하려 할 때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국정(일반)**

– 국정감사·조사권

•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 국회는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

* 국정감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1988년 부활되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012.3.21)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함.(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실시가능)

*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

• 국정감사 시기 :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 기간 감사실시

◎ **헌법기관 구성권**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권,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

◎ **외교**

– 초청외교활동 : 외국 의회 주요인사를 공식 초청하여 상호간의 이해증진 및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회 외교활동

– 방문외교활동 : 의회차원의 협력강화 및 외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국을 방문하여 외교목적을 달성하는 의회 외교활동

– 국제회의 참석 : 다자간 교류 협력강화 및 국제적 현안 대응을 위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를 개최하는 의회 외교활동

◎ **탄핵소추권**

– 탄핵소추의 대상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탄핵소추의 사유

•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직무와 관계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취임 전·퇴임 후의 행위 등은 제외됨. 다만 탄핵소추 절차가 개시된 이후 탄핵소추를 면탈할 목적으로 임명권자가 그 자를 전직시킬 경우의 직무행위는 포함. 이때 법률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긴급재정경제처분에 의한 명령 등이 포함됨.

• 위법행위에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법률의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도 포함됨

– 탄핵의 절차

• 소추 :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 다만,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심판 :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

– 탄핵소추의 효과

• 소추의결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 심판재정 :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이에 의하여 민사·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함

◎ 기타권한

–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승인권

• 대통령은 처분·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 상실

– 계엄해제 요구권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함.

–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 국회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고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 국회는 대통령의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 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는 물론 정치적 무능·정책결정상의 과오가 있는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해임행위를 구속하지 못함

– 국무총리·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국회(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음.

Ⅲ.선거와 투표방법

- 선거의 의미와 종류
- 투표절차와 참여방법

선거의 의미와 종류

■ 선거의 의미

선거는 대중이 그 나라의 대표자·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자치 의회의원 등)를 선출하는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선거를 통해 그 나라의 정치문화를 엿볼 수 있고 정치권력과 정치과정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정치 참여자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 선거 참여자

◎ 시민(유권자) : 지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공약을 꼼꼼히 살펴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는 최고의 주권행사자입니다.

◎ 정당과 후보자 :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하고 여론을 모아 정책을 만들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정정당당한 경쟁을 합니다.

◎ 언론 : 선거상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올바른 선거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 시민단체: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 헌법기관으로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예방 및 감시, 단속하며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취하여 투표참여를 제고하는 일을 합니다.

■ 선거의 종류

◎ 대통령 선거 : 만40세 이상인 자로 1명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입니다.

◎ 국회의원 선거 : 지역구의원와 비례대표의원으로 나뉘며, 만25세 이상인 자로 총 300명이 선출되고 임기는 4년입니다.

◎ 지방선거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 의회의원(지역구/비례대표), 교육감이 등이 선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 만25세 이상인 자로 각 지자체별 1인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 지방의원(지역구/비례대표) : 만25세 이상인 자로 정수는 법률 및 조례에 따르며 임기는 4년입니다.

○ 교육감 : 만25세 이상인 자로 각 시도별 1인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 비례대표란?**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뽑을 시 정당에 투표하여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방식입니다.

■ 선거의 원칙

"선거의 4대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말합니다."

◎ **[보통선거]** 만 18세(2002. 4. 16. 이전 출생)이상의 국민이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평등선거]** 모든 유권자는 1표씩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직접선거]** 나의 투표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안됩니다. 내가 직접합니다.

◎ **[비밀선거]**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 좋은 후보자 고르기

◎ **후보자 알아보기**

○ 선거벽보(포스터) : 선거벽보를 보면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선거공보(책자) : 선거공보(책자)를 보면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후보자토론 : 후보자 토론을 보면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후보자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좋은 후보자를 고르는 방법**

- ○ 후보자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 후보자가 정직한 지, 거짓말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 ○ 후보자가 주민을 위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투표절차와 참여방법

■ 투표 전 확인하기

◎ 투표날짜 및 투표소 위치 확인

○ 투표날짜는 달력이나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투표소의 위치는 우편으로 받은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소에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하여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 6시가 지나더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챙기기

○ 투표 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 입니다.

○ 중증장애인은 휠체어 탑승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 투표와 선거일 전 투표

◎ 선거일 투표

○ 선거 당일 투표안내문에 나와있는 내 투표소에 찾아가서 투표합니다.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 전에 하는 투표(사전투표)

○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일 전에 하는 투표입니다.

○ 사전투표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할 수 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전투표를 할 경우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 사전투표의 절차

- 사전투표는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4월 10일 ~ 4월 11일) 실시됩니다.
- 사전투표는 관내·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관내·관외 구분 기준]

-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 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관할구역으로 봅니다.

◎ 내가 사는 곳에서 하는 투표(거소투표)

○ 거소투표는 중증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을 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는 투표

○ 거소투표는 미리 신고를 해야 가능

○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 직원에게 전달

◆ **거소투표의 신고**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제3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한 신고서로 보지 않습니다.

◆ **거소투표**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지역구 투표용지는 1명의 후보자,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 「공직선거법」 제14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로서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 신고인수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제2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거소투표인을 10인 이상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은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거소투표인을 10인 미만으로 수용하고 있더라도, 후보자 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 투표의 순서 및 방법

○ **투표소 입장** : 신분증을 지참후 투표안내문에 표시된 투표소로 갑니다.

○ **선거인명부 확인** : 본인확인석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 **투표용지 수령** : 투표용지를 받습니다.(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1장,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1장)

○ **투표용지에 기표** :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원하는 후보자와 정당의 란에 각각 정확히 기표합니다.

○ **투표함 투입** :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고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 **투표소 퇴장** : 이것으로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 투표 인증사진 촬영은 투표소 내에서는 불가합니다.

〈 투표 순서 〉

※ 투표 시 주의할 점

◆ 유효투표 예)

- 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 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 인쇄 또는 사인날인이 누락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무효투표 예)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표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개표하는 방법

◎ 개표

○ 오후 6시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봉인하고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

○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표소 입구에서 각 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과 관련 서류등을 확인해서 접수

○ 접수된 투표함을 '개함부'에서 열어 개함상에 투표지를 쏟은 후 지역구 구회의원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따로 구분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

○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투표지분류기라는 기계장치를 통해 정당별·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

○ 정당별·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로 넘겨지며,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통해 1차 분류된 투표지의 매수를 정확히 세고 육안으로도 전부 확인하며 재확인대상 투표지의 경우 육안으로 분류·심사·집계해서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의 경우 정당별·후보자별로 분류해서 집계

○ 집계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정당별·후보자별로 작성된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등을 최종적으로 검열하게 되며 검열이 끝나면 위원장은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

○ 개표결과를 개표참관인과 언론기관에 배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시하며 개표가 마감되면 투표지를 봉인해서 일정기간 보관

○ 모든 개표과정은 투표와 마찬가지로 개표사무원, 개표관람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진행하며 개표관람증을 받으면 누구든지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상황 관람 가능

〈 개표 순서 〉

개표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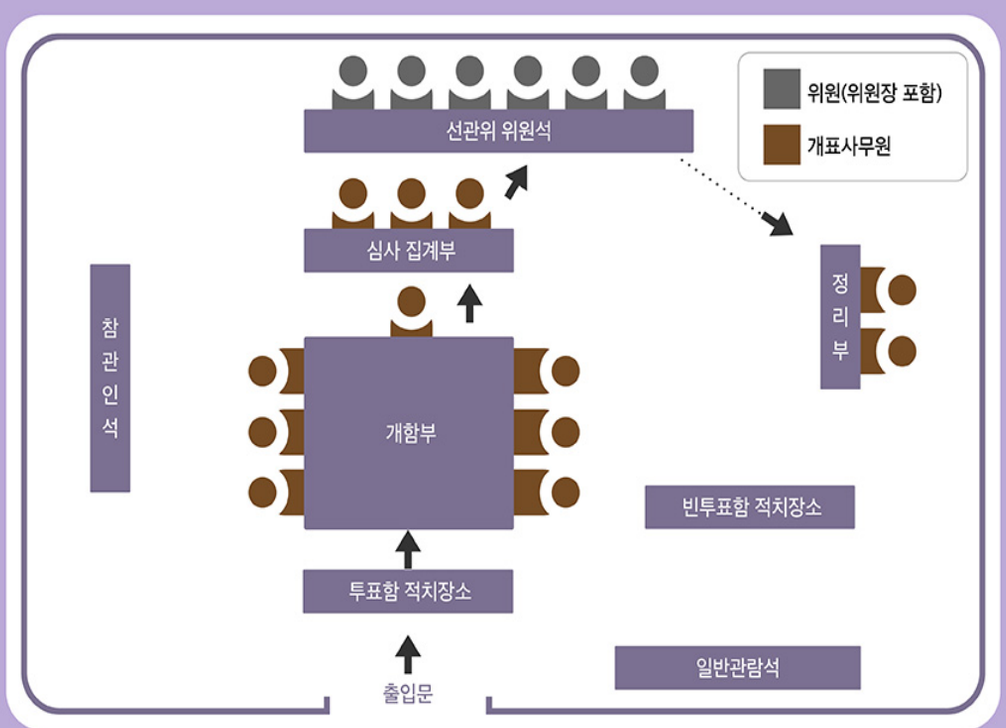

투표함 확인·접수 →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 정당·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 투표지 심사·집계 → 개표상황표 작성상황 적정여부 확인
→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 개표상황 보고 및 공개

Ⅳ. 개정된 선거법과 유의사항

-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 청소년유권자 유의사항 (법령 위반사례)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2020. 1.14 일부개정)

■ 의원정수 및 의석배분

◎ 의원정수 : 300명(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 의석배분 : 정당별 비례대표 할당의석수 산정(준연동 방식)

○ (연동배분의석수 산정)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

※ 의석할당정당은 현행과 같음(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전국유효득표 3%)

〈부칙〉 제21대 국선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배분

1) 30석에 대하여 준연동 방식으로 배분

2) 17석에 대하여 기존 의석배분방식(병립형) 배분

■ 비례대표 추천절차 법정화

○ (추천절차 제출 및 공표)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관위 제출 및 공표

※ 제21대 국선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제출(부칙§3)

○ (선거인단 투표) 민주적 심사절차와 당원·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자 추천

○ (회의록 등 제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후보자 등록 시에 선관위 제출

* 관련서류 미제출 시 수리불가 사유

○ (등록무효)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 서류를 검토하여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

■ 선거권 연령기준 18세 하향(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 *2002. 4. 16. 이전 출생자)

청소년유권자 유의사항
(법령 위반사례– 지역사회생활 중심으로)

◎ 할 수 있는 사례

- 청소년이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
- 청소년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되는 행위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하는 행위
-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통한 선거운동
- 정당에의 가입, 정치자금 기부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는 후원금 기부 안내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 중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의 경우 제외)
- 청소년으로 구성된 단체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행위
- 당·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예비)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비정규학력 기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청소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하는 후원금 기부 안내

Ⅴ.부　　록

–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

부록1 :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

■ 국회의 역사

○ 제헌국회 (1948.05.31.~1950.05.30)

제헌국회 구성 :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실시,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가하여 제주도(1년 후 2명 선출)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임기 2년의 198명 의원 선출. 1948년 5월 31일에는 역사적인 제헌국회 개원식이 거행, 초대의장에 이승만

헌법제정과 대한민국정부수립 :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내각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7월 12일 의결하였으며, 7월 17일 국회의장이 서명하여 공포함.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이범석 국무총리, 신익희 국회의장, 김병로 대법원장을 정부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 완료하고, 8월 15일에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

○ 제2대 국회 (1950.05.31~1954.05.30)

제2대 국회와 한국전쟁(6.25) : 의정사상 최초로 우리 손으로 만든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해 구성, 개원 일주일 만에 한국전쟁(6·25)이 발발

제1차 개헌 : 국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 제3대 국회 (1954.05.31~1958.05.30)

제2차 개헌 : 그 주요골자는 이 헌법개정 당시의 재임대통령에 대해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민법 제정 : 민법 1957년 12월 17일 국회에서 의결, 1958년 2월 22일 공포

○ 제4대 국회 (1958.05.31~1960.07.28)

4.19혁명(1960.3.15., 4대 대통령선거 관련)과 시국수습대책특별위원회 : 4월 19일 전국의 대학생들이 3·15부정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 국회는 4월 22일 시국수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이승만대통령 즉시하야, 3·15부정선거무효와 재선거실시, 과도내각하의 내각책임제개헌단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

제3차 개헌 :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안(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의결

○ 제5대 국회 (1960.07.29~1963.12.16)

양원제국회 출범과 제4차 개헌(반민주 처벌근거) : 제3차 개헌 이후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총선거는 민·참의원 동시선거로 민의원 233명, 참의원 58명이 선출(제2공화국,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로 하는 내각책임제)

제4차 개헌: 1960.11.29. 3·15 부정선거관련자 및 반민주행위자의 처벌 등 근거를 마련

국가재건최고회의(1961.05.19 ~ 1963.12.16.) :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소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 군사정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권을 사실상 행사

제5차 개헌: 1962.12.17.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대통령중심제)

○ 제6대 국회 (1963.12.17~1967.06.30)

민정이양과 민주공화당 등장 :민주공화당을 창당,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당총재와 대통령 후보지명을 수락,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당선

한일협정비준동의 : 1964년 8월 14일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이 의결

○ 제7대 국회 (1967.07.01~1971.06.30)

제6차 개헌 : 대통령의 3선을 허용,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 당선

○ 8대 국회 (1971.07.01~1972.10.17)

10월 유신 : 1972.10.17. 대통령은 국회해산과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비상계엄을 전국에 선포(10월 유신)

* 제8대 국회는 1년 3개월 만에 해산,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수행

제7차 개헌 : 비상국무회의는 임기 6년의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 제9대 국회 (1973.03.12~1979.03.11)

유신정우회 구성 : 유신헌법에 유신정우회가 새로이 구성.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3명의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은 대통령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긴급조치 :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9호를 발동

○ 제10대 국회 (1979.03.12~1980.10.27)

제8차 개헌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전두환대통령은 1980.9.29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제와 7년 단임의 대통령임기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

국가보위입법회의 : 개정헌법에 의하여 제10대 국회가 해산되고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그 권한을 대행(대통령이 임명한 81명의 의원으로 구성운영)

○ 제11대 국회 (1981.04.11~1985.04.10)

민주화추진협의회 : 1984.5.18 야권 정치인들과 재야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

○ 제12대 국회 (1985.04.11~1988.05.29)

양대정당 형성 : 신한민주당이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신당 돌풍을 일으키며 제1야당으로 등장,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양대정당 구도를 형성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4.13호헌조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 1987.4.13일 호헌조치를 통해 일체의 개헌논의를 중단, 1988년 2월 정부를 이양 발표

6월 항쟁 : 6.29 민주정의당 노태우대표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8개항의 6·29민주화선언을 발표

제9차 개헌 : 대통령직선제 개헌

○ 제13대 국회 (1988.05.30~1992.05.29)

여소야대 정국 :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 국정감사가 부활 등 국회의 위상이 제고

의정사상 최초의 청문회 : 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와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 제14대 국회 (1992.05.30.~1996.05.29)

민주질서확립을 위한 개혁 :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개정, 정치관계법을 개정,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공직자의 재산공개

지방자치제 실시 : 1995년 6월 27일 지방의원(광역·기초)선거,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선거 등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

국회운영제도 개선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된 의정활동의 TV

생중계 등 국회운영제도를 개선

○ 제15대 국회 (1996.05.30~2000.05.29)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 : 여·야간 정권교체(김대중 대통령)

IMF환란과 국정조사

○ 제16대 국회 (2000.05.30~2004.05.29)

대통령(노무현) 탄핵 소추 :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14일 동 탄핵 심판에 대하여 기각 결정

○ 제17대 국회 (2004.05.30~2008.05.29)

제17대 선거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의 시행

호주제 및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입법화

선거연령 하향조정 :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 제18대 국회 (2008.05.30.~2012.05.29)

제18대 선거: 2008년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 국회는 2009년 2월 5일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

○ 제19대 국회 (2012.05.30~2016.05.29)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음 :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을 개정하여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지적되어온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을 제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

간통죄 폐지, 테러방지법안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국회기, 국회배지 등 국회문양 한글화

“생애최초 청소년유권자를 위한 선거가이드”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발 행 인 | 유 명 규 회장
편 집 인 | 한 도 희 사무총장
발 행 일 | 2020년 3월 23일
주 소 | 04334)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4 시가이아빌딩 3층
대표전화 | 02-766-9363
전 송 | 02-766-9365
홈페이지 | http://youthnet.or.kr
전자우편 | highdignity1319@youthnet.or.kr

* 본 발간물내에 수록된 민주주의, 국회, 선거, 투표와 관련된 사항은 국회(www.assembly.go.kr)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내 자료를 인용, 참조하였습니다.

* 본 발간물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배포시 저작권법 136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